

# 저작권침해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최 승 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저작권침해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최 승 수\*\*

### 목 차

- I. 사건의 개요
- II. 피고 드림웍스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 피고 드림웍스의 관할항변
  - 2. 법원의 판단
- III. 저작권침해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 1. 국제사법 제2조
  - 2. 실질적 관련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 특수성 고려 원칙
  - 3. 예견가능성과 실질적 관련성
  - 4.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실질적 관련성과의 관계
  - 5. 전속관할 인정여부
  - 6.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관할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7. 합의관할 유효성 여부
- IV. 저작권침해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개별 쟁점
  - 1. 속지주의
  - 2. 불법행위지의 장소결정
  - 3. 객관적 병합 가능성
  - 4.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가능성
  - 5. 과잉관할의 문제
- V. 본 판결의 검토
  - 1. 실질적 관련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 2. 본 판결에 대한 비평
  - 3. 결론

원고투고일 : 2020.04.29. 1차 심사일 : 심사1 2020.05.31. 심사2 2020.05.23.  
심사3 2020.05.27. 2차 심사일: 심사1 2020.06.14. 심사2 2020.06.12.  
심사3 2020.06.13. 게재확정일 : 2020.06.17.

\* 본고는 2017년 8월 저작권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정리한 원고입니다.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I.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인 시나리오 작가인데 1999. 10. 경 자신이 창작한 ‘기호를 읽어라’라는 시나리오를 미국법인 드림웍스엘엘씨(Dreamworks L.L.C.) 및 그 공동설립자 스피버그 감독, 카젠버그, 게펜에게 끈으로 묶어서 누구나 쉽게 개봉할 수 있는 봉투에 넣어 각 발송하였다. 피고 드림웍스, 카젠버그 및 게펜에게 발송한 위 시나리오 3개는 2001. 2. 16. 한꺼번에 큰 봉투에 담겨 원고에게 반송되었고, 스피버그에게 발송한 위 시나리오는 봉투 아래쪽이 칼로 찢어진 상태로 2001. 2. 28.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피고 드림웍스는 일본 공포영화 링구(リング)를 영화 시나리오 전문 작가인 에렌 크루거에게 각색하도록 한 후 영화감독인 고어 버번스키로 하여금 ‘The Ring’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피고 드림웍스 이 사건 영화를 2002. 10. 18.부터 2002. 12. 19.까지 미국에서 개봉, 상영하는 한편, 캐나다, 일본 등으로 수출하여 상영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영화 등의 판권 구입, 상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한국에서도 씨제이엔터테인먼트가 2002. 11. 7. 피고 드림웍스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대한 10년간의 상영권을 부여받아 2003. 1. 10.부터 국내에서 상영하였다.

원고는 이 영화가 자신이 스피버그 감독에게 보낸 시나리오와 그 구성 및 모티브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드림웍스 및 씨제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 II. 피고 드림웍스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 피고 드림웍스의 관할항변

피고 드림웍스는 드림웍스가 설사 원고의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드림웍스는 대한민국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행위지 및 결과발생지는 모두 미국이며, 피고 드림웍스는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여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게 그 상영권을 부여하였을 뿐 직접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또는 피고 드림웍스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고,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판결과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판결이 합일확정 되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만약, 이 사건 소 중 피고 드림웍스가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배포, 상영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부분(이하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드림웍스가 이 사건 영화를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배포, 상영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부분(이하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1)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 6465 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 2 조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 1 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대한민국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드림웍스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에 배포하여 상영하였음을 이유로 그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또는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드림웍스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배포, 상영하였다면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결과발생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다

음으로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분도 피고 드림웍스가 미국에서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에 배포, 상영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쟁점 또한 이 사건 영화가 이 사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서 위 청구부분은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그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도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위 두 청구부분 모두에 대하여 재판을 함이 당사자의 편의, 재판의 적정, 신속한 진행,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드림웍스와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략) 소외 씨제이 주식회사는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37.04% 보유하고 있고, 소외 씨제이 주식회사는 1995. 위 스피버그, 카젠버그, 게펜과 공동으로 피고 드림웍스를 설립하여 2001. 12. 10. 현재 피고 드림웍스의 지분을 13%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드림웍스는 미국의 영화배급사 중 5위 안에 드는 대형 배급사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슈렉” 등을 제작, 배급한 사실, 피고 드림웍스는 1995.경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의 영화 배급권 등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고,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그 이후 피고 드림웍스로부터 연 4-5 편의 영화를 제공받아 국내에 상영해 온 사실, 대한민국의 영화시장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1/16.93, 일본에 비해서는 1/1.85에 불과하지만 캐나다보다는 큰 시장인 사실, 피고 드림웍스는 영화의 광고비, 홍보비, 배급관련 제반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영화 상영 등으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8-13%의 배급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현재 대부분의 상업적 영화는 그 제작단계에서부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영화제작사는 전 세계 영화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영화제작사로서도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하여 각국의 영화배급사와 일정한 제휴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고 드림웍스는 미국 영화계의 유명인사인 위 스피버그, 카젠버그, 게펜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영된 유명한 영화를 제작, 배급함으로써 전 세계에 걸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드림웍스는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드림웍스는, 이 사건 소 중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태양이 다양해지고 그 침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광역화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불법행위에 있어 그 침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에 국제재판관할을 제한없이 인정함은 행위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어 국

제재판관할배분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피고 드림웍스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대한민국은 피해자인 원고의 상거소지라는 점,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 규모가 비록 미국에 비해서는 작으나 일본, 캐나다에 비해서는 반드시 작다고 할 수 없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전체 손해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대한민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인 TRIPs 및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소 중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여 대한민국에서 위 두 청구부분 모두에 대하여 재판을 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 드림웍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 III. 저작권침해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 1. 국제사법 제 2 조

본 사안과 같은 저작권분쟁에涉外적 요소가 있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01년 7월에 개정된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총칙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실질적 관련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제 2 조 제 1 항).<sup>1)</sup> 나아가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사법 제 2 조 제 2 항).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1) 과거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으로 들었으나, 국제사법은 단순히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이라고 하고 다만 합리성의 원칙을 추가하였다고 한다(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595면 참조).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 다 59788 판결).<sup>2)</sup> 위 판결은 개정 국제사법 도입 전의 사건을 다루었지만 개정 국제사법 제 2 조에 관한 해석론적 지침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국제재판관할기준으로서 사익(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및 예측가능성)과 법원 및 국가의 이익(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고려대상으로 한다.

## 2. 실질적 관련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 특수성 고려 원칙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한국과 관련성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잣대로서 기능하는 탄력적인 개념이다.<sup>3)</sup> 실질적 관련성은 “당사자와 대한민국”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데, 이는 종전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기초에 관한 두 가지 접근방식, 즉, 대륙법계 전통의 법원-소송물 관련성(court-claim nexus)과 영미법계 전통, 특히 미국의 법원-피고 관련성(court-defendant nexus) 중 어느 한가지만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sup>4)</sup> 그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sup>5)</sup>

국제사법 제 2 조 제 2 항에서의 “국내법이 관할규정”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규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관할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주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불법행위지 등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 일응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모든 토지관할규정을 ① 그대로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② 국제적인 고려에 의해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③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적절치 않아 아예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④ 나아가 토지관할규정 외에 국제재판관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sup>6)</sup>

2)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는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 후렛트 팩카드 컴퍼니는 UDRP에 따라서 위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이전 명령을 내려줄 것을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청구하였고,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는 위 도메인 이름의 이전명령을 하여 위 도메인이름이 원고로부터 피고로 이전등록 되었다. 원고는 위 도메인 이름이 위와 같이 이전등록된 것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3)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595면.

4) 강영수,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70면..

5)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2001, 24면.



국제저작권 분쟁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여 배포 및 침해가 용이한 특성도 감안되어야 한다.<sup>6)</sup>

### 3. 예견가능성과 실질적 관련성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 다 59788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국제재판관할 인정의 근거로서 실질적 관련성 이외에 예견가능성 요건을 언급하였다.

“이 소송에서 문제되는 실체 판단의 요체는 결국 도메인 이름 선등록자의 등록·이용행위가 오프라인상의 피고의 기존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도메인 이름의 선등록자인 원고는 행정패널의 판정이 내려져 집행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내의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 중심지로 삼아 회원들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포함한 여러 도메인 이름들을 이메일 주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웹사이트의 주된 이용언어는 한국어이었으며 그 주된 서비스권역 역시 대한민국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이전 판정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곳 역시 원고의 사업본거지이므로, 과연 그러한 이용행위가 침해행위인지 여부 및 손해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증거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중략) 피고가 [UDRP] 해결정책에 따른 판정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sup>8)</sup>

6) 석광현, 앞의 책, 596면.

7) 이성우, “저작권분쟁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8권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49면.

8) 미국에 있어서는 특별관할인정과 관련하여 의도적 향유와 함께 법정지주에 서의 피소 예견가능성을 적법절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고,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 대법원도 예견가능성 요건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이규호, 18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사건에서 처음으로 ‘예측가능성 기준’(foreseeability test)을 관할결정의 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예측가능성이 왜 재판관

국제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문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동항 제 2 문에서는 합리적 원칙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원칙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중 ‘당사자 간의 공평’을 바탕으로 할 때,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 제소될 것인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예견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 자신의 행위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피고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법원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법원에 관할이 인정한다면 당사자 간의 공평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예측가능성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다른 재판적에 비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sup>9)</sup>

이러한 예견가능성을 실질적 관련 원칙과 분리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으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예견가능성은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대로 사익과 관련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포섭한 것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sup>10)</sup> 결국 예견가능성은 국제사법 제 2 조 제 2 항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요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4.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실질적 관련성과의 관계

국내법원에 제기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국내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더라도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국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더라도, 외국에 대체법정지가 있고,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한 법정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소송을 중지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

대법원 2002 다 59788 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에 따른다는 전통적인 재판관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라

---

할결정의 요소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는 “헌법의 적법절차는 장래의 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된 행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법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 바 적법절차가 그 근거라고 한다(이헌묵,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피고의 예측가능성의 기능”,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국제사법학회, 2013, 231면).

9) 이헌묵, 위의 논문, 236면.

10) 이규호,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5, 18면.

고 판시하여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가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sup>11)</sup>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적절한 대체법정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편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외국의 법정지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하게 편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항변하여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따라 소를 부적법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sup>12)</sup>

## 5. 전속관할 인정여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부여, 등록, 유효성 및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또는 등록국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저작권은 이와 달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국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저작권의 유효성 소송에 대하여 특정 국가의 전속관할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논의가 타당하고, 저작물의 본원국(country of origin)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13)</sup>

## 6.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관할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특정 국가에서 활동하거나 그 국가를 지향하여 활동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인할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참작하여 피고가 특정국가의 관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구를 게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관할을 배제한다는 관할합의 등의 조치를 위한 경우 실질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그 국가의 관할을 배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4)</sup>

## 7. 합의관할 유효성 여부

국제저작권 소송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

---

11) 석광현, 앞의 책, 115면.

12) 이규호, 앞의 논문, 20면.

13) 석광현, 앞의 책, 606면.

14) 노태약, “사이버불법행위의 재판관할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8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은 합의에 의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IV. 저작권침해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개별 쟁점

### 1. 속지주의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란 “지적재산권의 성립·소멸과 그 내용은 그 지적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결정되고, 그 효력도 부여국(예컨대 특허권의 등록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sup>15)</sup> 등록과 같은 국가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법률상 발생하는 저작권의 경우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설은 저작권에 대하여도 속지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속지주의는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효력을 정하는 것이지 사법적 보호를 특정한 국가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부여국이 아닌 피고의 주소지국의 일반관할을 인정하거나, 부여국이 아닌 불법행위지에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속지주의와 전혀 상충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속지주의의 결과 관련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적재산권은 부여국과 그밖에 실제로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그 결과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게 된다.<sup>16)</sup>

### 2. 불법행위지의 장소결정

다수설은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도 적용하므로 행

---

15) 서정우,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사법,” 「재판자료」 제33집, 섭외사건의 제문제 [상](1986), 579면; 강영수, 앞의 논문, 12면; 석광현,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4호, 민사판례연구회, 2012, 1071면.

16) 석광현, “한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변호사」 제3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417-418면.

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소위 격지불법행위의 경우 원고는 행동지 또는 결과발생지 어느 곳에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up>17)</sup>

### 가. 행동지

행동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실행행위가 행해진 곳으로 대체로 불법행위 시 행위자가 있는 곳이다. 등록을 요하는 산업재산권의 경우 부여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 국가에서만 실제로 보호되고 침해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관할의 근거가 되는 행동지가 부여국으로 제한되지만, 저작권 침해는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sup>18)</sup>

### 나. 결과발생지

결과발생지는 보호되는 법익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는 장소, 즉 법익침해 당시의 당해 법익의 소재지이다. 권리자가 복수의 국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은 복수의 국가에 존재하는 권리의 집합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결과발생지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복수의 국가에 있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의 경우 손해의 결과발생지 전부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면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는 피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관할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결과발생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나라 안에서 빈번하거나 중대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 나라를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한 경우 등 특정한 나라에서의 결과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sup>19)</sup>

### 다. 손해발생지

손해발생지는 법인이 침해된 장소가 아니라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손해발생지는 일반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 무시된다고 한다.<sup>20)</sup> 지적재산권의 경우 결과발생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지를 결과발생지로 볼 것은 아니다.

---

17) 석광현, 앞의 책, 609면.

18) 이성우, 앞의 논문, 153면.

19) 이성호,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8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256면; 이규호, 앞의 논문, 22면.

20) 석광현, 앞의 책, 615면.

### 3. 객관적 병합 가능성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결과발생지가 복수로 존재하고, 이에 따라 권리자가 다수의 국가에 소송이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각 국가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침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국가에서 발생한 침해에 국한해서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위 ‘모자이크 방식’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모자이크 방식을 지지할 경우 청구의 객관적 병합을 허용할 지가 문제로 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서 규정에서 규정하는 객관적 병합을 국제저작권침해소송에서 허용할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도 객관적 병합을 허용하는 방안 또는 법원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법원에만 객관적 병합을 허용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저작권침해소송 중 저작권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관할결정에 관한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즉, 불법행위의 효력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지를 관할로 함이 타당하지만, 저작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지를 관할로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침해금지 또는 폐기, 제거청구도 저작권을 실행하기 위한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분쟁의 간명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sup>22)</sup>

### 4.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가능성

우리 민사소송법 제 25 조 제 2 항에 의하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련재판적 조항을 유추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칙을 그대로 국제재판관할규칙화할 경우 공동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고, 원고의 forum shopping 을 조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하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23)</sup>

21) 석광현, 앞의 논문, 428면.

22) 손경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연구」 제8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490면.

23) 석광현, 앞의 책, 620면.

## 5. 과잉관할의 문제

피고의 주소지 원칙은 관할을 정하는 대원칙이라서 국제재판관할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영업소소재지, 재산소재지를 그대로 국제저작권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관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우리 민사소송법 제 5 조와 제 12 조를 확대해석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을 상대로 한국 내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을 요구하는 국제사법하에서는 민사소송법 제 5 조 제 2 항<sup>24)</sup>을 일의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유통이 용이한 저작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양해야 한다.<sup>25)</sup> 나아가 재산소재지 관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sup>26)</sup> 국제저작권소송과 같이 피고의 재산소재지와 그 분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국제사법 제 2 조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sup>27)</sup>

## V. 본 판결의 검토

### 1. 실질적 관련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본 판결에서 법원은 국제사법 제 2 조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24)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5) 이성우, 앞의 논문, 152면.

26)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7) 과잉관할의 쟁점에 관해서는 한애라,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판결의 추이 및 국제사법의 개정방향” 참조. 한판사는 법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일반관할의 경우 다수의 사실심 판결들은 분쟁과 그 영업소 자체의 영업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관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대표적인 과잉관할이므로 해석론에 의하여 혹은 입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재산 소재지 관할의 경우 사실심 판결들은 대체로 그 과잉관할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제한 기준이 판결마다 상이하여 역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피고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관련성

우선, 당사자인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실질적 관련성에 관하여는 (1) 소외 씨제이 주식회사는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씨제이 주식회사는 피고 드림웍스를 공동 설립하여 피고 드림웍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2) 피고 드림웍스는 대형 배급사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슈렉” 등을 제작, 배급한 사실, (3) 피고 드림웍스는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의 영화 배급권 등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고,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그 이후 피고 드림웍스로부터 연 4-5편의 영화를 제공받아 국내에 상영해 온 사실, (4) 대한민국의 영화시장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작지만 캐나다보다는 큰 시장인 사실, (5) 피고 드림웍스는 영화의 광고비, 홍보비, 배급 관련 제반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일정한 배급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현재 대부분의 상업적 영화제작사는 전 세계 영화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영화제작사로서도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하여 각국의 영화 배급사와 일정한 제휴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고 드림웍스는 전 세계에 걸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드림웍스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분쟁의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

이 사건 소송은 피고 드림웍스의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를 모두 문제삼고 있다.

### (1) 국내 저작권침해청구와의 실질적 관련성

법원은 우선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드림웍스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배포, 상영하였다면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결과발생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청구부분과의 실질적 관련성

나아가, 다음으로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 여부에 관하여는, 이 부분도 피고 드림웍스가 미국에서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에서 배포, 상영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쟁점 또한 이 사건 영화가 이 사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서 위



청구부분은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그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도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객관적 병합이론을 국제재판관할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청구부분에 대한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이 문제가 있다는 피고 측의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1)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2) 대한민국은 피해자인 원고의 상거소지라는 점, (3)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 규모가 비록 미국에 비해서는 작으나 일본, 캐나다에 비해서는 반드시 작다고 할 수 없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전체 손해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4) 대한민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인 TRIPs 및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 드림웍스가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5) 이 사건 소 중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여 대한민국에서 위 두 청구부분 모두에 대하여 재판할 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

## 2. 본 판결에 대한 비평

### 가. 예견가능성과 실질적 관련성의 관계 정립 문제

본 판결은 피고 드림웍스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피고 드림웍스의 피소 예견가능성을 끌어내고 나아가 그 예견가능성을 실질적 관련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피고의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 관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제사법 제2 조의 명문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중첩적 판단과정에서 국제사법이 제시한 ‘실질적 관련’의 요건이 왜곡될 위험까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sup>28)</sup> 앞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 다 59788 판결에서 살펴보았듯이 예견가능성은 사익과 관련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포섭한 것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견가능성의 부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 당사자와 법정지국간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일지라도 만약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실질적 관련성은 부인하도록 이론 구성함이 타당하다.

### 나. 주관적 병합여부에 대한 판단부재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할은 별 문제없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영화를 제작 배급한 피고 드림웍스와 피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

28) 손경한, 국제 저작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법률신문, 2005. 10. 6.

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드림웍스에 대한 관련재판적의 법리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다.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의 부적절함**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청구부분의 실질적 관련성에 관해서는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청구부분과 그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법원이 우리 민사소송법 제 25 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국제재판관할 인정하였다는 이론적 경로를 정확하게 실시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한편,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청구부분에 대한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이 문제가 있다는 피고 측의 항변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국제사법의 이론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이 사건 영화의 배급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외국이 불법행위로서의 행동지이거나 결과발생지로 볼 것인데, 한국이 어떠한 이유로 그 청구와 실질적 관련성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사유를 들어 실질적 관련성 부재 항변을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부적절한 법정지 이론 적용여부를 판단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라. 침해정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병합에 대한 판단부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와 침해정지청구는 그 권원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침해정지청구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같은 이론으로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간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3. 결론**

본 판결은 국제사법 개정 이후 국제저작권침해소송에 관하여 거의 처음으로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이후 국제저작권침해를 다룬 하급심 판결이 몇 개 나왔으나,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기한 판결을 찾기는 어렵다. 본 판결에 다루어진 쟁점과 미진한 쟁점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여 더욱 정치한 기준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영수,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2005.
-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2001.
- 손경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연구」 제8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 손경한, 국제 저작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법률신문, 2005. 10. 6.
- 서정우,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사법”, 「재판자료」 제33집, 섭외사건의 제문제[상](1986).
- 석광현,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國際私法 : ALI 원칙(2007)과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4호, 민사판례연구회, 2012.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 석광현, “한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변호사」 제3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이규호,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5.
- 이성우, “저작권분쟁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8권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이성호,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8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 이현목,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피고의 예측가능성의 기능”,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국제사법학회, 2013.

<Abstract>

##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Seung Soo Choi

In a lawsuit concerning legal relations with foreign factors,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f the parties or disputed matters are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m "substantial relation" here means that the subject of a party or dispute has a relev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so that it can justify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a state of current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urt has any substantial relation in individual cases, it must follow reasonable principles that conform to the ideology of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cluding the basic ideology of civil litigation that the court has to consider fairness between parties, the adequacy of the trial, and the speed of the trial process. Therefore, the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the specificity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light of the ideology and rational principles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is article deal with the substantial relation standard in 2003 gahap 87723 case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5, which is the first case of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since the revision of Korea private international act. This ruling, in determining the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defendant Dreamwork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mprehends the substantive relevance judgment factors to draw out the possibility of the defendant's prediction of the defendant Dreamworks and furthermore, the predictability of the defendant's prediction was used as the basis for the judgment of the substantive relation. However, after judging whether the defendant is likely to be foreseeable and then judging whether it is actually related based on it is clearly against meaning of Article 2 of Korea private international act, and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at the requirements of 'substantial relation' proposed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at risk of being distorted in such overlapping judgment process. Predictability is not a separate requirement because it is a factor to judge the actual relevance in relation to private interest. Rather, it is reasonable to construct a theory to

deny the substantial relation if there was a special situation that there was no predictability, even if it seem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state of court by considering the absence of predictability as a passive requirement.

---

Keywords : International Jurisdiction, Copyright,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Substantial Relation

## 저작권침해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최 승 수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대한민국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고는 국제사법 개정 이후 국제저작권침해소송에 관하여 거의 처음으로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다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3가합87723 판결을 중심으로 위 국제재판관할 기준 중 실질적 관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판결은 피고 드림웍스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피고 드림웍스의 피소 예견가능성을 끌어내고 나아가 그 예견가능성을 실질적 관련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의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 관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제사법 제2조의 명문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중첩적 판단과정에서 국제사법이 제시한 ‘실질적 관련’의 요건이 왜곡될 위험까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견가능성은 사익과 관련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포섭한 것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견가능성의 부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 당사자와 법정지국간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일지라도 만약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실질적 관련성은 부인하도록 이론 구성함이 타당하다.